

#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2월 9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재정경제부장관 한 덕 수

## ●대통령령 제19327호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중 “2개 이하”를 “1개”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민박사업 용으로서 객실이 7실 이하인 시설”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월 150만원”을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제13조”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 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①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이를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채
2.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제16189호

관  
부

2006. 2. 9. (목요일)

제23조제1항제1호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전의 신탁으로서”를 “「신탁업법」에 따른 금전의 신탁으로서”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협회중개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된”을 “코스닥시장에 상장된”으로 하며, 동조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와 「국제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가.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 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다.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 ⑧제7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제2항제1호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의 계산방법)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탁은 제2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한다.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제38조제1항제6호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하고, 동항제15호 본문중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을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으로 한다.

제40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의2에서 규정하는 연금에는 퇴직연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제40조의3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0조의3제2항”을 “법 제20조의3”으로 하고, 동항제2호 산식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제외한다.

제40조의3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제1호”를 “제3항제1호”로 한다.

3. 퇴직한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

체국 직원으로 임용·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연금

$$\text{과세대상 연금소득} = \text{총수령액} \times \frac{\text{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text{총기여금 불입월수}}$$

4. 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

$$\text{과세대상 연금소득} = \text{총수령액} \times \left( 1 - \frac{\text{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text{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right)$$

제42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한다)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

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제42조의2제3항제2호 산식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제외한다.

제42조의2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퇴직한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일시금

$$\text{과세대상 일시금} = \text{총수령액} \times \frac{\text{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text{총기여금 불입월수}}$$

④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text{과세대상 일시금} = \text{총수령액} \times \left(1 - \frac{\text{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text{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right)$$

⑤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액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1. 제42조의2제1항제6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중도인출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제42조의2제1항제6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제51조제3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 제23조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

나.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

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  
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  
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  
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  
하여 산정한 면적

제55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제1  
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은”을 “제1항제10호 및 제10호  
의2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부담금

(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중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  
연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  
좌(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라 한다)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  
한 보험료 등은”으로, “종업원”을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가  
입한 자를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제10호”를 “제1항  
제10호 및 제10호의2”로 한다.

10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제55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급  
여 또는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당해 급여 또는 적  
립금

제57조제1항중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종업원”을 “퇴직급여의 지급대  
상이 되는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가입한 자를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10분의 1”을 “100분의 5”로 하고, 동조제2  
항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일반지원시설·청소년지원시설·외국인여성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제80조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전의 동조 본문 및 각 호)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절차, 동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말한다.

제83조제6항중 “5만원”을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제8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이라 함은 집대비가 지출된 장소(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내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을 말한다.

제10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22조의2 각호의 채권”을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채권”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2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이후의 재직기간

③법 제48조제1항의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을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제112조에 제11항 내지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제7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당시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⑫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⑬법 제5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1.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분양권 중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2.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제1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5조의 제목 “(근속연수의 계산)”을 “(퇴직소득의 세액계산)”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은 퇴직 시 수령가능한 퇴직급여액(분할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수령가능퇴직급여액”이라 한다)에 부과될 퇴직소득산출세액에 퇴직 시 수령가능퇴직급여액 중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42조의2제1항제6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금액이 일시금과 연금으로 분할되어 지급되는 경우

2. 제42조의2제1항제6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 제132조제3항 중 “10만원 이상이고 법 제8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영수증의 명세서와 기타영수증의 집계표를 구분 기재한 것으로서”를 “5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계산서·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가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로 한다.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중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와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각각 제208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6항의 규정”으로 한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47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5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가목중 “부수토지”를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로 하며,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55조제16항을 제1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항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당해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와 연결한 시·군 안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동항 중 “1년”을 “2년”으로 본다.

제157조제6항제1호 본문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62조의2제2항제2호중 “「부동산중개업법」”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2 이상의”를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 이상의”로 하며, 동조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구조·용도·이용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동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제165조제5항 산식 외의 부분 후단중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 등록일”을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상장일”로,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을 “코스닥시장 상장일”로 하고, 동항 산식중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을 각각 “코스닥시장 상장일”로, “한국증권업협회 기준가격(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을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동조제6항 후단중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을 “코스닥시장 상장일”로, “한국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을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한다.

제167조제5항 전단중 “제59조”를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

조의2”로 하고, 동항 후단 중 “본다.”를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8호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으로 하고, 동항제8호의2중 “사용한 주택”을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으로 한다.

제168조제1항제3호중 “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을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으로 한다.

제168조의14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제17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19조제6호”를 “법 제119조제6

호 전단”으로 하고, 동조제7항 내지 제16항을 각각 제8항 내지 제1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5항(종전의 제14항) 및 제16항(종전의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법 제119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⑮법 제119조제1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23조제7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⑯법 제119조제1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비거주자가 제14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제18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26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 1.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 2.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0조제1호 단서중 “지급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지급받은 자”로 한다.

제201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또는 시기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하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중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분까지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1.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 : 지급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 2. 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 :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제201조의9중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20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03조에 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 한다)에게 퇴직일, 근속연수 등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자퇴직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1. 종업원의 퇴직이 발생한 경우
- 2.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이체 또는 입금되어 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의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원천징수의

무자"라 한다)가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 경우 퇴직자는 이체 또는 입금된 일자 및 금액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경우에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⑦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퇴직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경우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이하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라 한다)에 제9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첨부하여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과세이연계좌취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된 테이프·디스켓 등으로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⑨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의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받은 과세이연계좌취급기관은 퇴직자의 퇴직급여 지급현황, 근속연수 등이 포함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이하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이라 한다)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제20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15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라 함은 비거주자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7조의3을 제5장제3절의 제207조의6으로 하고, 제5장제3절에 제207조의3 내지 제20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이자등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 지급금액 중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세율
2. 지급금액 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여는 법 제1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90조의 규정은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02조의 규정은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07조제1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법 제156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에서 상대방국가(이하 이 조에서 “채약상대국”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
3. 해당 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서
4.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채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신고서·감사보고서·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19조제1호·제2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5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에 해당하고 해당 계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

③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⑤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①법 제156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207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한 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156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1. 보정할 사항
-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 3. 보정할 기간
-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12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213조제2항중 “근로소득(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제외한다)”을 “근로소득”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제2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①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 1.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 2. 제2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②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1. 급여의 귀속연도
- 2. 일용근로자 또는 거주자의 주민등록번호
- 3. 급여액
- 4. 소득세(결정세액을 말한다)

제2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216조의2제1항제3호중 “법 제119조제3호·제9호 및 제10호”를 “법 제119조제3호 및 제10호”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6조의3(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한다.

- 1. 법 제51조의3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 2. 법 제52조제1항제2호·제2호의2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 3. 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0조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의료비를 제외한다.
- 4.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수업료등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 5.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 6.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 7.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 불입액
- 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②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집중기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득

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국세청장은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제출안내 등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0조(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제223조 및 제2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법 제17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 1.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직장공제회에서 납입공제료를 기초로 지급하는 반환금자료
-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연금소득자료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①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대리운전용역
2. 소포배달용역
3. 간병용역
4. 골프장경기보조용역
5. 파출용역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②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서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7조제8항 및 제1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1. 골프장사업자
2. 병원사업자
3. 직업소개업자

4.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

③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및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제공대가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계산서미교부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 법 제8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20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고,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는 제20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며,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

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과세기간	비율
2002.1.1.~2002.12.31.	100분의 10
2003.1.1.~2003.12.31.	100분의 20
2004.1.1.~2004.12.31.	100분의 40
2005.1.1.~2005.12.31.	100분의 40
2006.1.1.~2006.12.31.	100분의 40
2007.1.1.~2007.12.31.	100분의 45
2008.1.1.~2008.12.31.	100분의 50
2009.1.1.~2009.12.31.	100분의 55
2010.1.1.~2010.12.31.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과세기간	비율
2002.1.1.~2002.12.31.	100분의 10

과세기간	비율
2003.1.1.~2003.12.31.	100분의 20
2004.1.1.~2004.12.31.	100분의 40
2005.1.1.~2005.12.31.	100분의 20
2006.1.1.~2006.12.31.	100분의 20
2007.1.1.~2007.12.31.	100분의 25
2008.1.1.~2008.12.31.	100분의 30
2009.1.1.~2009.12.31.	100분의 35
2010.1.1.~2010.12.31.	100분의 40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8조 및 제16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의2·제207조의4 및 제20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7조 및 제214조(기타소득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퇴직소득에 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후 최초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필요경비의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55조 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다음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30”을 “100분의 35”로 한다.

제9조(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접대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관한 적용례) ①제112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2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영수증수취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제15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43조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임원·사용인 또는 종사자가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연금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의8 및 제201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4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비거주자 양도소득 원천징수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

례) 제20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비거주자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4 및 제20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수입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2항·제5항 및 제21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관한 특례) 제2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2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대

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1조(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1세대의 구성원이 5년 이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한 주택을 2006년 7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후단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②「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4]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관련)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1. 제216조의3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		진국은행연합회(생명보험회사의 자료는 「보험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따른 생명보험협회를, 손해보험회사의 자료는 「보험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보험협회를 각각 자료집중기관으로 한다)
2. 제21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제216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등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고등교육법」·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등	교육인적자원부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에 지급한 수업료등	여성가족부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4. 제216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강료	노동부
5. 제216조의3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5년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방법 등을 정하고, 근로소득자가 매년 연말정산시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일부를 국세청장이 사업자로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저소득층 및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소득과약을 위한 과세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급조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용근로자의 소득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을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포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영 제8조의2)

- (1) 주택의 임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 심리를 억제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음.
-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범위를 2 주택 이하 임대자에서 1주택 임대자로 축소함.

나. 퇴직연금 등에 대한 과세방법 규정(영 제40조의3제2항, 제42조의2제1항·제4항·제5항, 제50조제2항, 제105조제3항, 제115조제2항, 제203조제4항 내지 제9항)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범위 및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2) 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액에서 본인 불입분 중 소득공제 초과분을 제외한 금액을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퇴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개인퇴직계좌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고, 퇴직연금 간에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연수의 계산 시 종전 근무지의 근무기간과 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함.

(3)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 및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 산입한도 축소(영 제55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제1항 및 제2항)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퇴직금의 사외적립(社外積立)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 부담금에 대하여 필요경비에의 산입한도를 정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축소함.

라. 지정기부금 대상에 비영리민간단체 추가(영 제80조)

(1)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받는 개인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수입금 중 개인으로부터의 회비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인 단체를 지정

기부금 대상에 추가함.

(3)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회적 역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간소화(영 제113조제2항 및 제216조의3 신설)

(1) 연말정산 간소화에 따라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직접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이 간소화됨에 따라 납세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수용 또는 국외 이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보완(영 제154조)

(1) 협의매수·수용 또는 국외이주로 인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비과세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국외이주로 인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이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3)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투기이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도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비거주자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신설 (영 제207조의3 신설)

(1)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세조약상의 이자세율이 일반적으로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14퍼센트보다 낮은 점을 이용하여 채권의 최종 보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보유하지 아니한 기간까지도 비거주자가 보유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조세조약상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 비거주자가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세율과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중 높은 세율

을 적용하도록 함.

아. 지급조서 제출대상 확대(영 제213조 및 제214조)

(1) 과세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급조서 제출대상인 소득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지급조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용근로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및 일부 기타소득 등을 지급조서 제출대상 소득에 포함함.

자. 과세자료 수집 강화(영 제224조 신설)

(1) 소득과약을 위한 과세기반 구축을 위하여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2)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 골프장경기보조·간병(看病)·대리운전 및 소포배달 등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를 포함함.

<법제처 제공>